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919

2024년 6월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5월 2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24년 6월 1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)

가. 제안이유

-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인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'녹색산업 육성 지원', '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' 민간위탁사업을 통폐합하여 탄소중립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관련 창업·중소기업의 육성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자 함.
-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

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□ 위탁사무명: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
- □ 민간위탁 유형: 예산지원형(사무형 위탁)
- □ 민간위탁 추진근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59조 (녹색기술·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
-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제23조 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□ 민간위탁 필요성
-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
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
- □ 위탁사무 내용
-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(기업발굴·창업 활성화, 교육·컨설팅, 시제품 제작 지원, 기업 평가 지원)
-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(투자유치·개방형혁신(오픈이노베이션) 지원, 판로개척·수출지원)
- 기후테크 정보 분석·제공(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,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, 기술·제품 등 대시민 홍보)

- □ 위탁기간: 3년('25.1.1.~'27.12.31.)
 □ 수탁자 선정 방식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 □ 소요예산: 868백만원(민간위탁금, '25년 기준)
- 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 - '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4.4.1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59조
-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제23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- 나. 예산조치: 2025년 예산편성(예정)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: '녹색산업육성 지원', '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'

민간위탁 종료 후 통합 신규 민간위탁 추진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'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'을 추진 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민간위탁 조례")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<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>

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<u>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</u> <u>경우</u>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u>기후테크</u> 산업 역량 강화

- · 기후테크 기업 발굴, 인큐베이팅, 창업 활성화
- · 기후테크 기업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

기후테크 성과 창출 기반조성

- · <u>기후테크</u> 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
- · 기후테크 사업 지속을 위한 기업평가 · 인증 지원

<u>기후테크</u> 정보 분석 및 제공

- ·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현황 분석
- · 국내외 기술 · 정책 · 산업 동향 및 전문정보 제공

<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>

나. 검토 의견

1) 민간위탁 신규(통ㆍ폐합) 추진 배경

 서울시는 녹색산업 관련 교육, 투자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주요 사무로 하는 '녹색산업지원센터'와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구매 확대 등을 위한 '녹색구매지원센터'를 별도 구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,

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생산·판로개척 사업이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기업교육·컨설팅·온라인 기획전과 유사하고, 녹색제품 구매 확대 업무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등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온 바 있음.

<녹색구매지원센터 중복사무 지적 사항 정리>

-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성격이 유사한 녹색산업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권고
 - 20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(조직담당관-27418, '22.10.10.)
- 효율성 제고 위해 '녹색구매 지원센터' 폐지, '녹색산업 지원센터'와 통합 추진 필요
 - '23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시 김웅 의원 보도자료, 세계일보 보도('23.10.15.)]
- 기후환경정책과 내 역할이 중복되는 센터들의 통폐합 필요
 - 제321회 정례회 '24 회계연도 예산심의 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

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1) 관련 기업 육성으로 하고,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음.

¹⁾ 기후테크(C-tech)는 기후(Climate)와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 기술을 말하며, 대통령 직속 '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'에서는 기후테크 유형을 클린테크, 에코테크, 푸드테크, 지오테크, 카본테크 등 산업 성격에 따라 총 5개로 분류하고 있음.

2)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

- 본 동의안은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.
-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①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(기업발굴·창업 활성화, 교육·컨설팅, 시제품 제작 지원, 기업 평가 지원), ②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(투자유치·개방형혁신(오픈이노베이션) 지원, 판로개척·수출지원), ③ 기후 테크 정보 분석·제공(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,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, 기술·제품 등 대시민 홍보) 등임.
-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위탁사무는 "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"와 "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무"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>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**사무** 4. (생략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8. (생략)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3)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, 추진근거 및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에는 대부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하였음.

<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>

제4조의4(민간위탁 동의안)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위탁사무 내용
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민간위탁기간

6. 수탁자 선정방식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8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4) 민간위탁 추진 절차

-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²)이 수립 되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³)한 바 있음.
-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신규사업은 사전조사 → 추진계획 수립 →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→ 시의회 동의 → 예산편성 및 시의회 의결 → 비용심사 → 적격자 심의위원회 → 협약서 심사 및 위수탁 협약 체결 → 민간위탁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 본 계획은 현재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.

²⁾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(신규)(기후환경정책과-5735, '24.4.16.)

^{3) 2024}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(기후환경정책과)(조직담당관-4079, '24.4.16.)

<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>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형		현 수탁기관	위탁기간	심의결과	비고
기후환경본부 (기후환경장책)		사무 형	신규 의타	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, 국가녹색기술 연구소	3년 /2511	적정 (권고)	[권괴 - 시업계획 및 시업규모(예산)를 적정 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

5) 민간위탁 성과보고서4) 개선요청사항 요약

- 조직 및 인력 운영: 전담 인력 이외에도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내 자체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, 녹색산업지원센터 전담 연구원과 수탁기관(국가녹색기술연구소) 연구원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함.
-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: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권으로 양호한 수준이며, 매년 회계감사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.

다만, 2022년 기준, 사업비의 40% 이상이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민간 위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의문인바. 이의 감소 방안 모색이 필요함.

○ **사업 성과**: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을 현실성을 고려하여,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일부 목표의 달성률이 200%가 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의 도전성 제고가 필요하며,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기반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⁴⁾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-녹색산업육성지원-('24.04., 서울특별시, 한국산업관계연구원)

6) 종합 의견

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본 동의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'역할중복센터의 통폐합 요구' 등에 따른 것으로,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폐지와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개편에 대해 이견 없으며, 소관부서는 향후 비용심사, 일상감사,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<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일정>

○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: 24년 6월

○ 비용심사(계약심사과) 및 일상감사(공공감사담당관) : 24년 7~8월

○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: 24년 9~10월

-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(기후환경정책과→공공감사담당관)

○ 협약서 심사(법률지원담당관) 및 위수탁 협약체결 : 24년 11월

붙임.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민간위탁 예산 산출 내역(2025년)

항목		내역	금액	구성비	비고
		기본급	168,252	19.4%	4명
인 건		제수당	30,812	3.5%	
비		퇴직충당금	16,029	1.8%	
		보험료	20,654	2.4%	
		소 계	235,747	27.1%	
		여비	1,320	0.2%	
안 영 교	사	무기기 임차료, 운영수당	7,179	0.8%	
		소모품, 우편통신비	3,777	0.4%	
	-	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	7,610	0.9%	
		기타(업무추진비)	2,860	0.3%	
		소 계	22,746	2.6%	
-	기후테크 산업역량 강화	스타트업 발굴 경연, 사업화지원	49,700	5.7%	
		전문교육 및 컨설팅	40,800	4.7%	
		시제품 제작 지원	76,000	8.8%	
		기업 평가 지원	21,000	2.4%	
	기후테크 성과창출 기반조성	투자, 수출상담회	87,000	10.0%	
		온, 오프라인 기획전	115,000	13.2%	
		오픈이노베이션	43,000	5.0%	
	_,, _	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	70,000	8.1%	
	기후테크 정보제공	뉴스레터, 자료집 제작	5,860	0.7%	
		홈페이지 구축, 홍보자료 제작	55,000	6.3%	
	자본형성	사무공간 구성 비용	30,000	3.5%	
		소 계	593,360	68.3%	
		위탁수수료	15,000	1.7%	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총액의 2% 이내 위탁수수료의
		부가가치세	1,500	0.2%	위탁수수료의 10%
		총 계	868,353	100.0%	

- 5. **질의 및 답변요지**: 생략
- 6. 토론요지: 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919

제출년월일: 2024년 5 월 27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혁신기술인 기후테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
- 나.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을 위해 기존 '녹색산업육성 지원', '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' 민간 위탁사업을 통폐합하여 탄소중립 신기술과 아이디어 개발 관련 창업·중소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다.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창업지원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를 민간에 신규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
- 나. 민간위탁 유형 : 예산지원형(사무형 위탁)
-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59조 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

-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

마. 위탁사무 내용

-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(기업발굴·창업 활성화, 교육· 컨설팅, 시제품 제작 지원, 기업 평가 지원)
-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(투자유치·개방형혁신(오픈 이노베이션) 지원, 판로개척·수출지원)
- 기후테크 정보 분석·제공(기후테크 산업 및 기업 실태조사, 동향 및 정책 정보제공, 기술·제품 등 대시민 홍보)
- 바. 위탁기간 : 3년 ('25. 1. 1. ~ '27. 12. 31.)
- 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- 아. 소요예산 : 868백만원(민간위탁금, '25년 기준)

자. 기대효과

- 기후테크 강소기업 육성 및 탄소중립 기술·제품개발 촉진
-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
- 차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 - '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4.4.1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59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·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,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
 - 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시장은 녹색 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, 실증 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·재산세·등록 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③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시립병원, 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8.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(예정)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'녹색산업육성 지원', '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

운영'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오동훈(☎2133-3586)